

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경위

가. 제 출 자 : 김기덕 의원 외 22명

나. 의안번호 : 제1744호

다. 제출일자 : 2024. 4. 3.

라. 회부일자 : 2024. 4. 8.

2. 제안사유

- 매년 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과 관련해, 전년도 추진 실적 및 문제점, 대책, 교통사고 현황 및 분석 등 자료의 경우, 다양한 유관기관, 기타 교통안전 담당부서 등의 방대한 자료 등으로 실적자료 취합 및 활용 시의 어려움이 있음
- 이에 보다 용이한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, 관계기관 및 부서 등과의 협력을 위한 실무협의회 운영 규정을 통해, 실무자 등의 업무 추진 시 자료 수집 및 시간 단축, 기타 명확한 시행 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 마련

3. 주요내용

가. 교통안전 시행계획 수립 시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
규정함(안 제9조제3항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교통안전법」, 「도로교통법」 등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입법예고

○ 기 간 : 2024. 4. 12. ~ 2024. 4. 16.

○ 제출의견 : 없음

라.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¹⁾

○ 제출의견 : 원안가결

- 교통안전 시행계획 수립 시, 관계기관 간 소통이 필요한 경우
실무협의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쟁점사항
없음

1) 교통운영과-5730호(2024. 4. 18.)

5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장훈)

가.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법정계획인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관계기관들의 협조가 필요함에 따라 다양한 관계기관과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임

나. 검토의견

- 「교통안전법」(이하 “법”)제3조2)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책을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·시행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시·도지사는 이러한 의무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음

- 서울시는 법 제17조3) 및 제18조4)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장관

-
- 2) 「교통안전법」 제3조(국가 등의 의무) ①국가는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. ②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.
 - 3) 「교통안전법」 제17조(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) ①시·도지사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·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시·도교통안전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시·도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·군·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시·군·구교통안전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. ③시·도지사가 시·도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시·군·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·군·구교통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.
 - 4) 「교통안전법」 제18조(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) ①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소관 지역교통안전

이 수립하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⁵⁾에 따라 시·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(시·도교통안전 기본계획)⁶⁾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⁷⁾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있으며, 해당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행계획⁸⁾을 매년 수립하고 있음

-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현황 등 다양한 자료의 수집이 필요하고, 관계기관과 부서와의 협력이 필요한 현실을 반영해 관련 실무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취지가 인정된다 할 것임

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시·도교통안전시행계획과 시·군·구교통안전시행계획(이하 “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②시·도지사는 시·도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시·군·구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
- 5) 「교통안전법」 제15조(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)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전반적인 교통안전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. -이하 생략-
- 6) 「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」 제8조(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시장은 「교통안전법」 제1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기본계획을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 단위로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방향 2. 그 밖에 교통안전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「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에 의한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
- 7) 「교통안전법」 제13조(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심의) ①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17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은 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(이하 “지방교통위원회”라 한다)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시·군·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(이하 “시·군·구교통안전위원회”라 한다)에서 심의한다.
「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 제3조(기능)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(이하 “교통위원회”라 한다.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1. 서울특별시 주요 교통정책에 관한 사항
- 8) 「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」 제9조(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시장은 제8조에 의한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해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2. 시행계획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3. 교통사고 현황 및 분석 4.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시책

- 법 제20조9)에서도 시장은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,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해 자료 등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
- 따라서, 동 조례개정을 통해 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를 통해 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 협조 등을 원활히 하여 계획의 내실을 높이고 시민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

9) 「교통안전법」 제20조(계획수립의 협력 요청) ①국토교통부장관, 지정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,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,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.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.